

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2025. 6.

계명대학교 교무처

1. 학칙 개정(안)

가.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

- 1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(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)에 근거하여 장춘대학 계명학원의 운영이 2026학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부터 기존의 2+2모델에서 4+0모델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
- 2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⑥항, ⑨항에 의거하여 시간제등록제 모집인원과 이수허용학점 변경 및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과 학사학위 추가 및 삭제

나. 신규 조문표

발의부서: 장춘대학 계명학원 행정팀, 계명시민·원격교육원 행정팀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>제30조의1(이수학점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협정관계에 있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<신 설>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⑦ ~ ⑧ (생략)</p>	<p>제30조의1(이수학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협정관계에 있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<u>및 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</u>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⑦ ~ ⑧ (현행과 같음)</p>	<p>2026학년도 장춘대학 계명학원 운영 근거 마련</p>
<p>제45조의2(복수학위와 공동학위 수여) ① 제30조의1제4항에 따라 상호 인정한 학점으로 양 대학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각 대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30조의1제6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우리 대학교와 해당 외국대학교의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45조의2(복수학위와 공동학위 수여) ① 제30조의1제4항에 따라 상호 인정한 학점으로 양 대학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각 대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30조의1제6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우리 대학교와 해당 외국대학교의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<u>제30조의1제6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 대학교 학위수여 조건을 총</u></p>	<p>장춘대학 계명학원 학위 수여 근거 마련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53조(등록금) ① 학생은 수업료, 입학금, 그 밖의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등록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학점등록<신 설>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1제6항의 외국대학교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78조(모집단위와 모집인원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간제등록제는 통합반과 별도반을 구분하여 모집하고, 모집인원은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한다.</p> <p>제83조(이수허용학점) ① 시간제등록제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(계절학기 포함)이내이며,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족한 학생의 경우 [별표 2]의 학위를 수여한다.</u></p> <p>제53조(등록금) ① 학생은 수업료, 입학금, 그 밖의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등록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학점등록<u>과 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 수강생</u>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1제6항의 외국대학교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78조(모집단위와 모집인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간제등록제는 통합반과 별도반을 구분하여 모집하고, 모집인원은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한다.</p> <p>제83조(이수허용학점) ① 시간제등록제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(계절학기 포함)이내이며,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장춘대학 계명학원 등록금 납부 기준 마련</p> <p>모집인원 변경</p> <p>이수 허용학점 변경</p>

현 행			개 정(안)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의 종류			[별표 3]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의 종류			학점은행제 학과명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학과(전공)</th> <th>학위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10">계명시민 교육원 원격교육원</td> <td>국어국문학<u>전공</u></td> <td>문학사</td> </tr> <tr> <td>경영학<u>전공</u></td> <td>경영학사</td> </tr> <tr> <td>사회복지학과</td> <td>문학사</td> </tr> <tr> <td>관현악<u>전공</u></td> <td rowspan="3">음악학사</td> </tr> <tr> <td>성악<u>전공</u></td> </tr> <tr> <td>작곡<u>전공</u></td> </tr> <tr> <td>피아노<u>전공</u></td> <td rowspan="2">미술학사</td> </tr> <tr> <td>회화<u>전공</u></td> </tr> <tr> <td>패션디자인<u>전공</u></td> <td>패션학사</td> </tr> <tr> <td>체육학<u>전공</u></td> <td rowspan="2">체육학사</td> </tr> <tr> <td>태권도학과</td> </tr> <tr> <td><신 설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학과(전공)	학위의 종류		계명시민 교육원 원격교육원	국어국문학 <u>전공</u>	문학사	경영학 <u>전공</u>	경영학사	사회복지학과	문학사	관현악 <u>전공</u>	음악학사	성악 <u>전공</u>	작곡 <u>전공</u>	피아노 <u>전공</u>	미술학사	회화 <u>전공</u>	패션디자인 <u>전공</u>	패션학사	체육학 <u>전공</u>	체육학사	태권도학과	<신 설>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학과(전공)</th> <th>학위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10">계명시민 교육원 원격교육원</td> <td>국어국문학<u>과</u></td> <td>문학사</td> </tr> <tr> <td>경영학<u>과</u></td> <td>경영학사</td> </tr> <tr> <td>사회복지학과</td> <td>문학사</td> </tr> <tr> <td>관현악<u>과</u></td> <td rowspan="3">음악학사</td> </tr> <tr> <td>성악<u>과</u></td> </tr> <tr> <td>작곡<u>전공</u></td> </tr> <tr> <td>피아노<u>과</u></td> <td rowspan="2">미술학사</td> </tr> <tr> <td>회화<u>과</u></td> </tr> <tr> <td><삭 제></td> <td><삭 제></td> </tr> <tr> <td><삭 제></td> <td>체육학사</td> </tr> <tr> <td>태권도학과</td> <td rowspan="2">공학사</td> </tr> <tr> <td>컴퓨터공학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학과(전공)	학위의 종류	계명시민 교육원 원격교육원	국어국문학 <u>과</u>	문학사	경영학 <u>과</u>	경영학사	사회복지학과	문학사	관현악 <u>과</u>	음악학사	성악 <u>과</u>	작곡 <u>전공</u>	피아노 <u>과</u>	미술학사	회화 <u>과</u>	<삭 제>	<삭 제>	<삭 제>	체육학사	태권도학과	공학사	컴퓨터공학과
구분	학과(전공)	학위의 종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명시민 교육원 원격교육원	국어국문학 <u>전공</u>	문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경영학 <u>전공</u>	경영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회복지학과	문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관현악 <u>전공</u>	음악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악 <u>전공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작곡 <u>전공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피아노 <u>전공</u>	미술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회화 <u>전공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패션디자인 <u>전공</u>	패션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체육학 <u>전공</u>	체육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태권도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학과(전공)	학위의 종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명시민 교육원 원격교육원	국어국문학 <u>과</u>	문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경영학 <u>과</u>	경영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회복지학과	문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관현악 <u>과</u>	음악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악 <u>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작곡 <u>전공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피아노 <u>과</u>	미술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회화 <u>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삭 제>	<삭 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삭 제>	체육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태권도학과	공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컴퓨터공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부 칙			컴퓨터공학과 추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이 개정학칙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.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가.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(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)에 근거하여 장춘대학 계명학원의 운영이 2026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부터 기존의 2+2모델에서 4+0모델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

나. 신규 조문표

발의부서: 장춘대학 계명학원 행정팀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>제54조의2(원격수업운영 제한) 교과과정에 필요한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교과목은 일부 또는 전체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. 2. 승인을 받은 국외여행과 공무출장의 보강은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 제한시간은 별도로 정한다. 3.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취업생, 외국인 유학생, <신 설> 교류 협정에 따른 타대학 수강생 등에게는 해당수업 담당교수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과제 및 평가 등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. 4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정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하려면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	<p>제54조의2(원격수업운영 제한) 교과과정에 필요한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교과목은 일부 또는 전체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. 2. 승인을 받은 국외여행과 공무출장의 보강은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 제한시간은 별도로 정한다. 3.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취업생, 외국인 유학생, 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 수강생, 교류 협정에 따른 타대학 수강생 등에게는 해당수업 담당교수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과제 및 평가 등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. 4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정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하려면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	<p>장춘대학 계명학원 학생의 원격수업 이수 근거 마련</p>
<p>제69조(졸업의 기준) ①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69조(졸업의 기준) ①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1. 4년(8학기) 이상(건축학과 5년(10학기) 이상, 약학과, 제약학과는 6년(12학기) 이상) 등록. 다만 「학칙」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</p> <p>2. 졸업논문(대체포함) 이수 등 학과 졸업기준 충족</p> <p>3. 제1전공 이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</p> <p>4. 복수전공(융합전공 포함) 이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</p> <p>5.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교양과목 이수 와 어학점수 취득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1. 4년(8학기) 이상(건축학과 5년(10학기) 이상, 약학과, 제약학과는 6년(12학기) 이상) 등록. 다만 「학칙」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</p> <p>2. 졸업논문(대체포함) 이수 등 학과 졸업기준 충족</p> <p>3. 제1전공 이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</p> <p>4. 복수전공(융합전공 포함) 이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</p> <p>5.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교양과목 이수 와 어학점수 취득</p> <p>6. <u>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 수강생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개정세칙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장춘대학 계명학원 학생의 졸업 기준 근거 마련</p>